

부산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모니터링

2022.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명

- 부산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목적

- 그간 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기업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3. 모니터링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즉시시행 대상 기업(종사자수 50인 이상)
-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기업체
- 모니터링 대상: 170개사
- 사례 발굴: 65개사(제조업 39개사, 건설업 15개사, 운수업 11개사)

4. 모니터링 방법

- 직접 모니터링

5.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중대재해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및 애로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 등

6. 모니터링 기간

- 2022. 1. 17. ~ 24.

1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 5만 5,616개사, 근로자 103만 5,124명
- 50인 미만 기업 24년까지 유예기간 부여, **즉시 시행 대상** 3,480개사, 근로자 47만 1,972명
- 이중 중대재해가 특정 산업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518개사, 건설업 287개사, 운수 및 창고업 392개사에서 직접적 영향 클 것으로 예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 (전체 대상 기업)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5만 5,616개사, 근로자 103만 5,124명

- 관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5,616개사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19.2%의 사업체가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는 103만 5,124명으로 비중은 약 70.6%에 해당
- 다만 종사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즉시 시행 대상) 종사자 수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지역의 즉시 시행 대상 업체는 3,480개사(1.2%), 근로자 47만 1,972명(32.2%) 수준

- 중대재해가 대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특정 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실제 직접적인 영향은 해당 산업에서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제조업: 518개사 / 65,194명 ○ 건설업: 287개사 / 43,979명 ○ 운수 및 창고업: 392개사 / 50,627명
- 서비스 및 유통업은 2,209개사로 비중은 크나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낮은 산업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상 및 즉시 시행 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 대상)		50인 이상 (즉시 시행 대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체 산 업	52,136	563,152	3,480	471,972
제 조 업	9,154	106,441	518	65,194
건 설 업	4,119	47,933	287	43,979
유 통 업	9,574	88,446	180	18,053
운 수 및 창 고 업	2,272	30,371	392	50,627
서 비 스 업	26,719	285,161	2,029	285,112
기 타	298	4,776	-	-

※ 출처: 통계청 사업체조사(2019년 기준)

2

부산지역 중대재해 현황

- 2020년 관내 산업재해 사망자수 113명, 만명당 사망자수인 사고만인율 1.04 전국 수준 근접
- 발표된 사망재해 사업장 확인 결과 건설업 13건, 제조업 8건, 운수 및 창고업 1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의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
- 단, 질병사망에 경우 산안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하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현황

○ (산업재해 사망) 2020년 관내 산업재해 사망자수 113명

- 같은 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2,062명 중 5.5%가 부산에서 발생
- 근로자수 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1.04로 전국수준 1.09에 근접

○ (업무상사고 사망) 2020년 부산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55명, 사망만인율 0.50

○ (업무상질병 사망) 2020년 부산의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58명, 사망만인율 0.53

○ (광역시 비교) 광역시 간 비교 결과 부산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사망만인율 역시 울산과 광주에 이어 높은 수준

[행정구역별 업무상사고 및 업무상질병 사망자 및 사망만인율]

구분	산업재해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망 요인별 구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전국	2,062	1.09	882	0.46	1,180	0.62
서울	225	0.50	85	0.19	140	0.31
부산	113	1.04	55	0.50	58	0.53
대구	70	0.77	20	0.30	28	0.31
인천	92	0.96	46	0.48	46	0.48
광주	80	1.27	18	0.40	51	0.81
대전	56	0.77	19	0.37	24	0.33
울산	56	1.21	26	0.56	30	0.65

※ 출처: 고용노동부(2020년 기준)

○ (업종별 현황) 2020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발표된 관내 사망 재해 사업장 22건 중 건설업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8건, 운수 및 창고업 1건 등의 순

※ 해당통계는 전수조사는 아니며,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기준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 기존 시행중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 시행에 맞춰 교육 강화, 매뉴얼 보완, 현장 안전 점검 등의 대응 노력을 확대 중
- 또한 전담 부서 신설과 안전 예산 마련, 안전관리자 등 신규 인력 채용, 전문 컨설팅 시행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극적 대응도 다수 확인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 (대다수 선제적 대응 준비 중) 법 시행에 맞춰 지역 대다수의 기업이 자구적인 안전 조치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준비 중
 - 법안을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만큼 자구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 이므로 대다수 안전관련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아직 사례나 판례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대하고 직원 교육 강화, 현장 점검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대응
 - 모니터링 결과 지역 대다수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존 갖춰놓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매뉴얼과 규칙 등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내 매뉴얼을 토대로 내부 안전보건관리지침을 개정 중에 있음” - 기계·금속 제조업체
- “법 시행에 맞춰 본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대응 중” - 건설업체
- “안전 교육 강화,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고양하고 위험요소 제거 활동 병행” - 기계·금속 제조업체
- “시행령을 참고하여 기업의 안전 시스템을 사전 점검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인증원(KOSHA)을 통해 보완 중” - 건설업체
- “안전 교육을 월1회 진행하고 노후화된 장비는 매일 검사를 진행 중” - 철강 제조업체
- “협력업체와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모두 공통으로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 중” - 화학 제조업체
- “내부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리가 엄격해 졌고 매달 2~3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 - 화학 제조업체

- (새로운 안전 시스템 구축) 안전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별도의 안전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 인력 신규 채용, 노후 설비 교체 및 전문 컨설팅 시행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됨
 -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한 기업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전문 컨설팅과 ISO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등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 또한 일부 기업은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경영 방침을 수립해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어 이미 지역에서도 안전이 경영의 주요 이슈로 대두, 경영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올해 안전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규모는 2억원 수준” - 운수업체
-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2명 등 총 4명의 인력을 신규채용 했으며, 전담조직인 안전관리팀 신설을 검토 중” - 전기·전자 제조업체
- “기존 현장에 안전관리자만 두었는데 안전 감시자, 안전 보조원 등 인력을 추가로 총원해 현장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건설업체
- “안전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ISO45001도 작년 말 취득함” - 건설업체
- “법 시행에 맞춰 인력과 예산 확보는 물론 각 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 - 기계·금속 제조업체
- “안전관리조직을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법 시행에 맞춰 컨설팅을 통해 추가 인력 채용과 예산 편성 등 각종 준비를 마쳤음” - 운수업체
- “전담 조직을 구성 중이며 지난해부터 관련 법령을 체크하면서 노무사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 “인증제도, 자율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다방면 대응방법 확인 중” - 운수업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선포식 개최 예정” - 건설업체
-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안전관리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도 준비 중” - 화학 제조업체
- “현장별로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 점검을 다니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선포식 개최도 계획하고 있음” - 건설업체

-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과 여력 부족으로 대응 수립이 쉽지 않음
- 법이 요구하는 각종 안전 체계 구축 및 관리상 조치의 기준과 수준의 모호성
-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
-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기업 경영 의지 약화와 사업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애로사항

- (모호한 규정에 따른 대응 난항) 기업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체계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를 요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수준이 명확하지 못해 선제 대응이 어려움
 -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 체계 구축에 명확한 기준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대응을 요구하는 수준이라 기업 스스로 기준 설정이 어려움
 - 특히 안전 관련 별도 예산,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 법이 요구하는 각종 이행 조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기업들이 대응에 난항을 호소하는 만큼 컨설팅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실정과 특성에 맞는 대응 수립 지원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이 명확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대비·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곤란하며 법무법인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 화학 제조업체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9개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이 어렵고 협회나 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는 상황” - 철강 제조업체
- “법조문이 간단하게 이뤄져 있어 실무적으로 해석하기 모호하고 시행령이 명확히 알기 어려워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건설업체
- “법과 기준이 너무 애매해 어느 선까지 준비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 - 철강 제조업체
- “법과 기준이 애매해 실무적 대응이 쉽지 않아 향후 사례 발생 시 중점사항과 취약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할 예정” - 기계·금속 제조업체
- “안전대장과 위험물품 확인서 등 각종 서류 관련하여 해설서에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이 없어 준비에 어려움이 많음” - 고무제품 제조업체

- “아직 1호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처벌의 강도와 기업의 준비 노력이 얼마나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모호함” - 화학 제조업체
- “법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서류, 조직구성,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 (선제 대응을 위한 기업 부담 가중) 또한 코로나19로 기록치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법 시행에 맞춰 각종 안전 관련 대책을 수립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인적 부담 가중

- 법 시행에 강제적으로 준수할 수밖에 없어 대응 노력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지만 교육 강화와 비품 및 시설 확충에서 부터 안전 관련 예산 마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 모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함
- 또한 인력 채용 관련해서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직종 인력 부족으로 임금 수준이 크게 확대되면서 구인 애로도 함께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원가절감 압박 속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협력업체로 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확인됨

-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선 안전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장에서도 안전 관련 비품과 설비를 구비해야해 비용 부담이 우려됨” - 운수업체
-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시설 확충 등 비용 지원 필요” - 철강 제조업체
- “제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나 안전관리 인력 채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이 부담되어 아직까지 대응을 못하고 있음” - 철강 제조업체
- “현장별 안전관리 담당자도 추가 채용해야 하고 교육비용 등이 소요되는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내 중” - 건설업체
-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안전관리비가 부담 될 수밖에 없고 원청의 원가절감에 따라 안전관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 - 건설업체
- “협력업체들이 안전과 관련된 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존과 달리 경직된 모습을 보여 업무협약이 원활하지 않음” - 운수업체
-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자 채용에 애로 발생” - 건설업체
- “안전관리자 몸값이 높아져 인원 채용이 쉽지 않고 안전관리자 책임 가중으로 기피 현상까지 발생” - 운수업체

○ (과도한 처벌에 대한 높은 우려) 법 취지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접 처벌과 1년 이상 하한형 징역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

-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징역형 등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어 법 시행이 자칫 기업의 경영 의지를 약화하고 사업 활동을 축소할 우려가 큼
- 뿐만 아니라 보건과 안전 관련 담당자 선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가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이에 대한 면책 규정이 명확해져야 하며 고의범에나 해당하는 하한형 징역형의 완화 필요

- “경영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상당한 불안감을 체감할 수밖에 없고 사고 발생 시 처벌로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 운수업체
- “공장 단위별로 책임자들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며 경영 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음” - 화학 제조업체
- “사업주에게 징역형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있어 경영의지를 약화 시킬 수 있음”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생각되며 징역형 처벌과 면책 규정의 부재는 큰 부담” - 기계·금속 제조업체
-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아무도 안전책임자 혹은 임원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음” - 기계·금속 제조업체
-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이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이에 대한 면책 규정도 명확해져야 함” - 운수업체
- “경영자의 부담 가중은 사실상 안전관리자의 부담이고 전체 직원의 부담” - 건설업체

○ (산업의 특수성 반영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제정되면서 해운업 등 산업의 특수성 반영이 부족

- 해사안전법 등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해운업은 위탁 대행 업무가 많은 특성상 제조업, 건설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산업에 일괄 적용되면서 산업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선원공급을 대행하고 있는데 해상에서 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비용과 투자의 주체가 선주이지만 일정부분 선원과 관련된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운수업체
- “선박 운행의 안전 책임은 선주에게 있어 선주가 의무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보지만 장담할 수 없어 사례 발생 시 대응을 찾아야 함” - 운수업체